

청주지방법원 2020. 1. 8 선고 2019가단51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2. 11.

판결 선고 2020. 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7,915,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6. 6.부터 2019. 10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결론 부분의 지연 손해금 연 15%는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연 12%로 감축하였으므로, 그와 같이 고친다)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정선오

별지